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89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9. 10. 2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89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8호, 2018.12.1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이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를 강화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벌꿀류 등 일부 식품을 자연상태 식품으로 재분류하여 표시사항을 적용하도록 하며, 자연상태 식품의 한글 표시 면제 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어류 등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를 구체적인 어종까지 표시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영양성분 표시의 허용오차 범위 적용 관련 예외 규정 중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규정 신설(안 I. 3. 커, II. 1. 머. 1))

- 1) 총칙 중 “신선 농·임·축·수산물”에 관한 용어의 정의 신설
- 2) 공통표시기준 중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자 등이 해당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업소 명칭·소재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등에 대한 표시 규정 개정(안 III. 1. 차, 타, 너, 서, 처)

- 1)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중 기타표시사항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및 일부 자구수정
-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천일염, 벌꿀류, 로열젤리류를 자연상태 식품으로 재분류 및 기타표시사항 규정 정비
- 3)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중 재포장 등에 관한 표시 규정을 세부 표시기준(별표 1)에서 개별표시기준으로 이동·정비
- 4) 식용란의 표시사항 중 사업장 명칭 표시 삭제

다.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자연상태 식품 관련 규정 개정(안 III. 1. 터)

- 1)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을 채취·생산자, 채취·생산단체명 또는 포장업체명으로 변경

- 2) 자연상태 식품에는 채취·생산연도를 표시하되, 신선 식품류에 대해서는 채취·생산일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 3)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식품 중 신선 식품류에 대해서는 생산일자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 4)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품질을 표시한 농·임·수산물 및 직거래 농·임·수산물에는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되는 농·임·수산물 중 투명 포장 식품은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라.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수산물 명칭 표시 정비 및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범위 관련 조항 등 개정(안 「별지 1」 1. 가. 3), 라. 12), 사. 1), 자. 6))

- 1)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명칭으로 표시하고, 고시된 명칭이 없는 경우 국제적으로 공인된 수산물 분류학에 따른 종의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 2) 식품첨가물 중 혼합제제류 원재료에 대한 명칭 표시방법 정비
- 3) 영양성분 표시의 허용오차 범위 적용 관련 예외 규정 중 검사주기, 시험·검사기관에 관한 조항 개정 및 일부 자구수정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TF, 전화: 043-719-2189,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 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8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 3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신선 농·임·축·수산물”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 제외)·수산물로서 건조·냉동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II. 1. 머.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

략할 수 있으며, 진열상자 또는 별도의 표지판의 기재사항 중 영업소 (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생략할 수 있다.

Ⅲ. 1. 차. 2) (2) (아) 중 “조유했을 때”를 “물에 타는 등 조제했을 때”로 한다.

Ⅲ. 1. 차. 2) (7) 중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Ⅲ. 1. 타. 2) 중 가)부터 차)까지를 (1)부터 (10)까지로 하고, 카)를 (11)로, (1)부터 (3)까지를 (가)부터 (다)까지로, 타)부터 파)까지를 (12)부터 (13)까지로, 하)를 (14)로, (1)을 (가)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초, 소스류, 카레(커리),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식염 (천일염 제외)

(가) 식초

초산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발효식초의 경우에는 과실·곡물숯, 과실주, 과실착즙액, 곡물주, 곡물당화액, 주정 또는 주류 등의 원재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해당 원재료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

Ⅲ. 1. 타. 2) 중 (5)를 (마)로 하고 (가)를 삭제하며, (나)의 번호를 삭제

하고, 나)의 (1)과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식염(천일염에 한함)

(1) 터목 2)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2) 주표시면에 식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Ⅲ. 1. 너. 2) 라)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가) (다만, 포장육, 포장육에 그 재포장일자를 표시하는 경우 및 식육
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는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Ⅲ. 1. 서. 2) 중 가)부터 파)까지를 (1)부터 (13)까지로 하고, 하)를 삭제
하며, 가) (1)부터 (3)까지와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벌꿀류 및 로열젤리류

(1) 터목 2)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2) 벌꿀류의 경우 주밀원의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꿀, 밤꿀 또는 잡
화꿀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꿀의 경우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
하여 생산한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꿀입니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화분가공식품

Ⅲ. 1. 처. 1) 중 가)의 (2)를 삭제하고, (3)부터 (6)까지를 (2)부터 (5)까지로

하며, 3) 및 4)를 각각 2)와 3)으로 한다.

Ⅲ. 1. 터. 2) 중 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나) 채취·생산자, 채취·생산자단체명 또는 포장업체명(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업소명 포함)

다) 채취·생산연도(신선 농·임·축·수산물은 채취·생산일자). 다만, 채취·생산연도 또는 생산일자가 서로 다른 내용물 또는 품목을 혼합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생산일자 또는 생산연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Ⅲ. 1. 터. 2) 중 아)의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4)와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선 농·임·축·수산물을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생산일자를 생략할 수 있다.

(4)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 양곡의 경우에는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생산연도는 모든 양곡에 표시하여야 한다.

(5)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농·임·수산물 중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1』 1. 가. 3) 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원재료명은 사목. 1) 나)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1』 1. 라. 12)를 삭제한다.

『별지 1』 1. 사. 1) 중 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나)의 (1)부터 (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나)의 2) 중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원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많이 남아있는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나머지 원재료는 상기 순서 다음에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다.

(1) 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명칭(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외래어의 경우 한글표기법에 따른 외국어 명칭 포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1)에 고시된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해양수산부 또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구 등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표시

(나) 수산물 분류학에 따른 생물 분류[종(種)-속(屬)-과(科)-목(目)-강(綱)-문(門)-계(界)] 중 종의 명칭으로 표시

(3) (1) 또는 (2)에 따라 표시한 명칭 바로 뒤에 괄호로 생물 분류 중 “OO속” 또는 “OO과”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긴가이석태(민어과)

라)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혼합제제류의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혼합제제류를 구성하는 식품첨가물 명칭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첨가물 명칭은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 대신 [표 6] 또는 [표 7]에서 규정한 간략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면류첨가알칼리제(탄산나트륨, 탄산칼륨), 혼합제제(설탕, 안식향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별지 1』 1. 자. 6) 중 라)의 “가) 내지 다)에서”를 “가)부터 다)까지”로 하고, 라)의 (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라)의 (2) 중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기관((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에서 1년마다 검사한 평균값과 표시된 값의 차이가 허용오차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다)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부칙<제2019- 호, 2019.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8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p> <p>I. 총칙</p> <p>1. ~ 2. (생 략)</p> <p>3. 용어의 정의</p> <p>가. ~ 처.(생 략)</p> <p><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8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p> <p>I. 총칙</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용어의 정의</p> <p>가. ~ 처. (현행과 같음)</p> <p>커. <u>“신선 농·임·축·수산물”이란</u> <u>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u> <u>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u> <u>농산물·임산물·축산물(「축산물</u> <u>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u> <u>제외)·수산물로서 건조·냉동 등</u> <u>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u></p>
<p>II. 공통표시기준</p> <p>1. 표시방법</p> <p>가. ~ 러. (생 략)</p> <p>며. 다음의 식품에 대하여는 그 식 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p> <p>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p>	<p>II. 공통표시기준</p> <p>1. 표시방법</p> <p>가. ~ 러. (현행과 같음)</p> <p>며. ----- ----- -----</p> <p>1) -----</p>

현 행	개 정 (안)
<p>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u>있다</u>.</p> <p>가)~다) (생 략)</p>	<p>----- ----- ----- -----</p> <p><u>있으며, 진열상자 또는 별도의 표지판의 기재사항 중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생략할 수 있다.</u></p> <p>가)~다) (현행과 같음)</p>
<p>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p> <p>1. 식품</p> <p>가. ~ 자. (생 략)</p> <p>차. 특수용도식품</p> <p>1) 유형</p> <p>가) ~ 아) (생 략)</p> <p>2) 표시사항</p> <p>가) ~ 하) (생 략)</p> <p>거) 기타표시사항</p> <p>(1) (생 략)</p> <p>(2) 조제유류</p> <p>(가) ~ (사) (생 략)</p> <p>(아) 조제유류의 영양성분표</p>	<p>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p> <p>1. 식품</p> <p>가. ~ 자. (현행과 같음)</p> <p>차. 특수용도식품</p> <p>1) -----</p> <p>가) ~ 아) (현행과 같음)</p> <p>2) -----</p> <p>가) ~ 하) (현행과 같음)</p> <p>거)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가) ~ (사) (현행과 같음)</p> <p>(아) -----</p>

현 행	개 정 (안)
<p>시는 영유아에게 먹이는 방법 에 따라서 <u>조유했을 때의</u> 100ml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할 수 있 으며, [별표1] 1. 아. 에 따른 영 양성분 표시에 있어 1일 영양성 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의 표 시를 생략할 수 있다.</p> <p>(3) ~ (7) (생 략)</p> <p>(7)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가) ~ (라) (생 략)</p> <p><u><신 설></u></p> <p>카. (생 략)</p>	<p>-----</p> <p>-- <u>물에 타는 등 조제했을 때</u>-</p> <p>-----</p> <p>-----</p> <p>-----</p> <p>-----</p> <p>-----</p> <p>(3) ~ (7) (현행과 같음)</p> <p>(7)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u>“의약품 및 건강기능식 품이 아닙니다” 등을 표시하여 야 한다.</u></p> <p>카. (현행과 같음)</p>
<p>타. 조미식품</p> <p>1) 유형</p> <p>가) ~ 바) (생 략)</p> <p>2) 표시사항</p> <p><u><신 설></u></p> <p><u>가) ~ 차) (생 략)</u></p>	<p>타. 조미식품</p> <p>1) ----</p> <p>가) ~ 바) (현행과 같음)</p> <p>2) -----</p> <p><u>가) 식초, 소스류, 카레(커리),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 가공품, 식염(천일염 제외)</u></p> <p>(1) ~ (10) (현행 가)~차)와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u>카) 주의사항</u></p> <p><u>(1) ~ (3) (생 략)</u></p> <p><u>타) ~ 파) (생 략)</u></p> <p><u>하) 기타표시사항</u></p> <p><u>(1) 식초</u></p> <p><u>(가) 초산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u></p> <p><u>(나) 발효식초는 과실·곡물 술덧, 과실주, 과실착즙액, 곡물주, 곡물당화액, 주정 또는 주류 등의 원재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해당 원재료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u></p> <p><u>(2) ~ (4) (생 략)</u></p> <p><u>(5) 식염</u></p> <p><u>(가) 식용으로 사용되는 천 일염은 26) 자연상태 식품의 표시사항을 준용하되 주표시면에 식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u></p> <p><u>(나) (생 략)</u></p>	<p><u>(11) (현행 카)와 같음)</u></p> <p><u>(가) ~ (다) (현행 (1)~(3)과 같음)</u></p> <p><u>(12) ~ (13) (현행 타)~파)와 같음)</u></p> <p><u>(14) -----</u></p> <p><u>(가) -----</u></p> <p><u>초산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발효식초의 경우에는 과실·곡물술덧, 과실주, 과실 착즙액, 곡물주, 곡물당화액, 주정 또는 주류 등의 원재료 명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해당 원재료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u></p> <p><u>(나) ~ (라) (현행 (2)~(4)와 같음)</u></p> <p><u>(마) (현행 (5)와 같음)</u></p> <p><u><삭 제></u></p> <p><u><번호삭제> (현행 (나)와</u></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 <신 설> <신 설></p> <p>3) (생 략) 하. ~ 거. (생 략)</p>	<p>같음)</p> <p><u>나) 식염(천일염에 한함)</u> <u>(1) 터목 2)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u> <u>(2) 주표시면에 식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u></p> <p>3) (현행과 같음) 하. ~ 거. (현행과 같음)</p>
<p>너.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p> <p>1) 유형 가) ~ 아) (생 략)</p> <p>2) 표시사항 가) ~ 다) (생 략) 라) 유통기한<<u>단서 신설</u>></p> <p>3) (생 략) 더. ~ 버. (생 략)</p>	<p>너.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p> <p>1) ----- 가) ~ 아) (현행과 같음)</p> <p>2) ----- 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u>다만, 포장육, 포장육에 그 재포장일자를 표시하는 경우 및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u>)</p> <p>3) (현행과 같음) 더. ~ 버. (현행과 같음)</p>
<p>서.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p>	<p>서.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p>

현 행	개 정 (안)
<p>1) 유형 가) ~ 다) (생 략)</p> <p>2) 표시사항</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가) ~ 파) (생 략)</p> <p>하) 기타표시사항</p> <p>(1) 벌꿀류</p> <p>(가) <u>주밀원의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꿀, 밤꿀 또는 잡화꿀</u></p>	<p>1)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2) -----</p> <p>가) <u>벌꿀류 및 로열젤리류</u></p> <p>(1) <u>터목 2)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u></p> <p>(2) <u>벌꿀류의 경우 주밀원의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꿀, 밤꿀 또는 잡화꿀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u></p> <p>(3) <u>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꿀의 경우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꿀입니다.”로 표시하여야 한다.</u></p> <p>나) <u>화분가공식품</u></p> <p>(1) ~ (13) (현행 가) ~ 파)와 같음)</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u>등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u></p> <p><u>(나) 사양별꿀 또는 사양별</u> <u>집꿀의 경우 주표시면에 12포</u> <u>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u> <u>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u> <u>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u> <u>한 사양별꿀 또는 사양별집꿀</u> <u>입니다.”로 표시하여야 한다.</u></p> <p>어. ~ 저. (생 략)</p>	<p>어. ~ 저. (현행과 같음)</p>
<p>처. 식용란(수입식용란을 포함 한다)</p> <p>1) 표시사항</p> <p>가) 최소포장단위(표시의무자: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p> <p>(1) (생 략)</p> <p>(2) <u>사업장 명칭(축산법 제</u> <u>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 가축</u> <u>사육업으로 허가·등록한 명칭)</u></p> <p>(3)~(6) (생 략)</p> <p>나) (생 략)</p> <p>3)~4) (생 략)</p> <p>커. (생 략)</p>	<p>처. 식용란(수입식용란을 포함 한다)</p> <p>1) -----</p> <p>가) ----- -----</p> <p>(1)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2)~(5) (현행 (3)~(6)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2)~3) (현행 3)~4)와 같음)</p> <p>커.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터. 자연상태 식품</p> <p>1) (생 략)</p> <p>2) 표시사항</p> <p>가) <u>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u></p> <p>나) <u>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원)</u></p> <p>다) <u>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u></p> <p>라)~사) (생 략)</p> <p>아) 기타표시사항</p> <p>(1) (생 략)</p> <p>(2) <u>식품 중 농·임·축·수산물</u>의 보존을 위하여 <u>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u></p>	<p>터. 자연상태 식품</p> <p>1) (현행과 같음)</p> <p>2) -----</p> <p>가) <u>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u></p> <p>나) <u>채취·생산자, 채취·생산자단체명 또는 포장업체명(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업소명 포함)</u></p> <p>다) <u>채취·생산연도(신선 농·임·축·수산물은 채취·생산일자).</u> 다만, <u>채취·생산연도 또는 생산일자가 서로 다른 내용물 또는 품목을 혼합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생산일자 또는 생산연도를 표시하여야 한다.</u></p> <p>라)~사) (현행과 같음)</p> <p>아) -----</p> <p>(1) (현행과 같음)</p> <p>(2) <u>신선 농·임·축·수산물을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u></p>

현 행	개 정 (안)
<p>1)~2) (생 략)</p> <p>3)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 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 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과 같다.<후단신설></p> <p>가)~다) (생 략)</p> <p>4)~5) (생 략)</p> <p>나.~다. (생 략)</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 <u>이 경우 원재료명은 사목 1) 나)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u></p> <p>가)~다) (현행과 같음)</p> <p>4)~5) (현행과 같음)</p> <p>나.~다. (현행과 같음)</p>
<p>라.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p> <p>1)~11) (생 략)</p> <p>12) <u>축산물 중 원료제품의 포 장을 제거한 후 저장성이 변하 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 는 경우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포장육 에 그 재포장일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2)에서 정한 표시방 법에 따라 제조일자를 사용하 여 유통기한을 표시하거나, 1) 에서 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모두 표</u></p>	<p>라.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p> <p>1)~11) (현행과 같음)</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u>시하여야 한다.</u></p> <p>마. ~ 바. (생 략)</p>	<p>마. ~ 바. (현행과 같음)</p>
<p>사. 원재료명</p> <p>1) 식품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p> <p>가) <u>식품의 처리·제조·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u> 다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나머지 원재료는 상기 순서 다음에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다.</p> <p>나) 원재료명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한다.</p> <p><u><신 설></u></p>	<p>사. 원재료명</p> <p>1) ----- -----</p> <p>가) <u>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원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많이 남아있는</u> ----- ----- ----- ----- -----</p> <p>나) ----- ----- ----- ----- -----</p> <p><u>(1) 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명칭(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u></p>

현 행	개 정 (안)
	<p><u>외래어의 경우 한글표기법에 따른 외국어 명칭 포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2) (1)에 고시된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가) 해양수산부 또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구 등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표시</u></p>
<p><u><신 설></u></p>	<p><u>(나) 수산물 분류학에 따른 생물 분류[종(種)-속(屬)-과(科)-목(目)-강(綱)-문(門)-계(界)] 중 종의 명칭으로 표시</u></p>
<p><u><신 설></u></p>	<p><u>(3) (1) 또는 (2)에 따라 표시한 명칭 바로 뒤에 괄호로 생물 분류 중 “OO속” 또는 “OO과”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u></p> <p><u>(예시) 긴가이석태(민어과)</u></p>
<p>다)~아) (생 략)</p> <p>2)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는</p>	<p>다)~아) (현행과 같음)</p> <p>2) -----</p>

현 행	개 정 (안)
<p>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p> <p>가)~다) (생 략)</p> <p>라)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u>고시된 혼합제제류의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혼합제제류를 구성하는 식품첨가물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첨가물의 명칭표시 등은 나)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u></p> <p>(예시) <u>면류첨가알칼리제 (탄산나트륨, 탄산칼륨)</u></p> <p>아. (생 략)</p>	<p>-----</p> <p>가)~다) (현행과 같음)</p> <p>라) -----</p> <p><u>「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혼합제제류의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혼합제제류를 구성하는 식품첨가물 명칭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첨가물 명칭은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 대신 [표 6] 또는 [표 7]에서 규정한 간략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u></p> <p>(예시) <u>면류첨가알칼리제 (탄산나트륨, 탄산칼륨), 혼합제제(설탕, 안식향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u></p> <p>아. (현행과 같음)</p>
<p>자. 영양성분등</p> <p>1) ~ 5) (생 략)</p> <p>6)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p> <p>가) ~ 다) (생 략)</p>	<p>자.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p> <p>-----</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라) 실제 측정값이 <u>가) 내지 다)에서</u>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p> <p>(1) (생략)</p> <p>(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2개 이상의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하는 경우</u></p> <p>(가) ~ (나) (생략)</p> <p><u><신설></u></p>	<p>라) ----- <u>가)부터 다)까지</u> -----</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u>2개 이상의 기관((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에서 1년마다 검사한 평균값과 표시된 값의 차이가 허용오차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u></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국가표준기본법」에서 <u>인정한 시험·검사기관</u></p>